

인천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나6049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나60499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4. 20 선고 2020가단25085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원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광미

변론 종결2022. 9. 22.

판결 선고2022. 10. 20.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21. 4. 20. 선고 2020가단25085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다음에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2018. 2. 2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8. 2. 22. 접수 제631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 1) 원고의 C에 대한 각 지급명령상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 2) 소외 회사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계속되던 중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12,000,000원은 사해행위로 인한 수익금 중 일부를 원상회복한 것에 해당한다.

나. 시효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2호증,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2021. 4. 29. 원고의 C에 대한 각 지급명령상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93911)를 제기한 사실, 위 사건에서 2022. 9. 15. '원고의 C에 대한 각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이유로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22. 10. 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외에 원고의 C에 대한 각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407조는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48605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형성의 소로서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고(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77785, 277792 판결 참조), 원상회복의무 역시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성립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참조). 이처럼 채권자취소권을 소 제기의 방식에 의하여 행사하도록 하고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도록 정한 것은 채권자취소권이 제3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으로 하여금 취소권의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게 하고 아울러 이를 다른 채권자에게 공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6435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 등 참조).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 계속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가액배상이 이루어졌을 경우 비록 주문에는 법률행위의 취소와 관련된 사항이 없기는 하나 취소권의 요건이 기재된 청구원인 사실이 그대로 결정문에 현출되어 있어 제3자에 대한 공시기능도 충분하므로, 이는 확정판결에 기하여 가액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6435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27926 판결 등 참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94879 판결 참조)이나 조정조서 또는 화해조서에

의하여 가액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 계속 중 그 채권자와 수익자가 합의하여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채권자가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제3자에 대한 공시기능도 충분하지 못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책임재산의 회복이 이루어졌다거나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12,000,000원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C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 원리금 합계 60,172,468원(원금 15,043,985원, 이자 45,128,483원) 중 12,000,000원을 대위변제하면서 C의 잔여 채무를 감면받은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가액배상액에서 위 12,000,000원을 공제할 수 없고, 이 사건 청구는 위 12,000,000원의 범위에서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2쪽 11행의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을 "2016. 10. 5."로, 7쪽 11~12행의 "소외 회사가 2018. 6. 11.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4811호"를 "소외 회사가 2018. 4. 24.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단4811호(이 사건은 이송되어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17661호로 진행되었다)"로 각 고치고, 피고의 항소이유와 관련하여 위 제1항의 판단을 추가하는(제1심판결 7쪽 17행부터 8쪽 13행까지 부분은 위 제1의 다항으로 대체한다)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보면

제1심판결 주문에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재판장판사원용일

판사박정운

판사권성우

별지